

2022년 농업기술센터 자체 종합감사 결과(공개용)

우리시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2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I 감사 개요

- 감사기간: 2022. 6. 21. ~ 6. 24.(4일간)
- 감 사 반: 감사팀장 외 4명
- 감사범위: 2019년 8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각종 지시사항 및 주요 시책 추진사항
 - 세출예산 집행 및 민원처리 실태
 - 공사추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집행사항 적정 여부 등

II 감사 결과

- 지적사항
 - 가. 행정상 조치: 21건(주의 18건 / 시정 3건)
 - 나. 신분상 조치: 12명(주의 12명)
 - 다. 재정상 조치: 시정(회수) 3건 / 3,312,220원

Ⅲ 주요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회계처리 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5]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는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을 하고,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원인행위)을 결정하며,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지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절차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되어야 한다.
- 그런데, ○○○○○에서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 이후에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지연 입금한 사실이 있다.

□ ○○○○ ○○○○○○ 지원사업 업무 소홀

- 「2021년 ○○○○ ○○○○ 시설·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의 관리·감독하에 장비구입 및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판매업체로 하여금 기계·장비의 AS 확보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동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은 제품구입 설치 완료시 현장 확인 후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이때 보조사업자는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조례에 의거 보조금으로 지원된 장비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구입장비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 그런데, ○○○○에서는 2020~2021년 기간 동안 총 3건의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판매업체로 하여금 기계·장비의 AS 확보를 위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지 아니하고, 제품 구입설치 완료 후 현장 확인을 하면서

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현장 확인 당시 보조사업자가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조례에 의한 표지판 부착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 대상자는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으로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때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며, 반일연가, 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에서는 ○○○ 외 ○○○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연가 등을 이유로 기준근무일수가 15일 미만임에도 정액분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세출예산 통계목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외에 무인 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에 대한 역무대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 또한, 재료비는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등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12건)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등)에 의하면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증빙자료로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 등)이용 영수증 사본,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기관 공문 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2019년~2020년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종일 출장이 아닌 경우에도 식비 전체를 지급 하였고 지출증빙 자료가 없는 교통비를 지급을 하는 등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건설공사 감독 및 검사·정산 업무 소홀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64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1)”, 제9절 “1-가-3)” 에 의거 건설공사를 감독하고 검사 시에는 계약서,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규격 또는 시공방법에 따라 계약의 이행내용을 정확히 감독 및 검사하여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는 재시공, 감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에서는 “○○○○○○○ ○○○ ○○○공사 외 2건” 을 계약 체결하여 준공처리 하면서 공사 중 또는 준공검사 시 정산 조치 없이 준공처리함으로써 공사비 2,174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지방보조금 발생 이자 계산 업무 처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금의 반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확정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방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런데, ○○○○○○에서는 “2021년 ○○○○○○ ○○○ ○○○○ 도비보조금” 이 교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집행하여 지급 제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발생 이자 계산을 소홀히 하여 26,320원을 반납한 사실이 있다.

○○○ ○○○○○ ○○ **보조사업 감독 업무 소홀**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업무 소홀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 현황을 확인·점검하여 취득현황은 보고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시행일(2021. 9. 6.) 이후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중요재산의 공시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농업보조금 중복·편중 지원

- 「지방재정법」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는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재정사업관리규정” 이라 함) 제35조 제7항과 8항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수혜이력, 농업경영에 등록DB,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에서는 보조사업 신청자인 ○○○이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해 동일한 홈페이지에 유사한 사업내용인 「○○○○○○○○○○○○○○○○○○ 지원」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지만 보조금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지원하여 동일한 사업자에게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하였으며, 보조사업 신청자인 ○○○가 ○○○ ○○○ ○○○○
○외 ○○○○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 ○○○○○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동일한 사업자에게 동일한 필지에 동
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한 사실이 있다.

보조금 전용통장 미사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보조금 회계관리”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액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고,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도록 되어있다.
- 또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등을 교부결정 전에 사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에서는 보조사업자(○○○○○○○○○○○○○○○○○○○○, ○○○○ ○○○○○○○○○○○○○○○○○○○○○)가 개설한 보조금 전용통장 명의를 잘못 되었음에도 주의 통보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 ○○○○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 ○○○○ ○○○○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시장은 농기계구입자의 농기계 공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농기계 구입확인 및 활용과 관리상태 및 자격기준 유지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신농업 및 새로운 농기계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에서는 ○○○ ○○○ ○○○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에 대한 매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사업 특성상 사후관리 대상자가 많아 전수 조사가 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사 지연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실적보고)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시자체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에서는 “2019년 ○○○○○○ 지원”, “2021년 ○○○○○○ 지원”, “2021년 ○○○○○○ 조성” 과 “2021년 ○○○○○○ 조성”, “2021년 ○○○○○○ ○○○○ 지원” 과 “2021년 ○○○○○○ ○○○○ ○○ 지원”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정산검사를 기한 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정산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민원처리기한 미준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와 제19조에는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고,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에서는 민원 15건에 대해 5분 내지 최대 2일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센터 ○○○○○ 관리 소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14일 이내에,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홈페이지 ○○○상담 코너에 2019년 8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글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 중 6건은 광고성 게시글이고, 나머지 5건은 질의민원에 해당하는데도, 광고성 글은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방치하고 있고, 3건의 질의민원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답변을 게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및 ○○○○ 심의회 운영 부적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1항 내지 제3항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구성할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보조사업 대상자 심사에서 제척되며,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또한,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인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2019년 10월 15일 「○○○ ○○·○○ 및 ○○ ○○ ○○ 심의위원회」의 보조사업자 선정 안건 심의과정에서 의결사항에 ‘○○ 심의위원회’ ○○분과 위원인 ○○○ 등 3인이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스스로 심사의결을 회피하여 결정했다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별로 분리하여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부 결정과 함께 해당 위원이 직접 서명을 하여 회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 중 과반수가 넘는 3인이 보조사업의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 ○·○○○ 심의회 운영 부적정

- 「농촌진흥법」 제2조(정의)제1호에는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조(목적) 및 제 6조의2(시·군 심의회 구성), 제6조의3(시·군 심의회의 기능)에는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학계·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 체제를 구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군별 ‘농업 산·학협 동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규정 제14조(운영세칙)에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급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규정에는 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이 부재하여, 위원 본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안건 심의에 해당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규정 제14조에 따라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 피·회피 관련 조항을 세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그런데, ○○○○○○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내용을 운영 세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심의회 회의록에 ‘위원 본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안건 심의에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것에 위원들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 등 2 인이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의결서를 분리하여 작성하지 않고 해당 위원이 직접 심의의견과 서명을 기입하여 제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소홀

- 「사천시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근로계약)에 따르면 사용부서는 채용예정 근로자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근로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에서는 2021년 2건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서약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당직명령 업무 소홀

- 「사천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에 따르면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하고,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부서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 중에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에서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6월 현재까지 24건의 당직명령을 발령하면서 당직근무일 7일 전까지 발령하여야 함에도 2일 내지 4일간 지연하여 발령하였으며,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당직근무 1일 전까지 받아야 함에도 64건의 당직근무 변경을 하면서 지연하여 결재를 득하는 등 당직명령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사업소 사용료 세입처리 지연

-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제9조(사용료) 제3항에 “사용료 납부기간은 사용허가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 사용료를 세입처리함에 있어 사용일 전까지 세입하지 아니하고 3일에서 34일 지연 세입 처리한 사실이 있다.